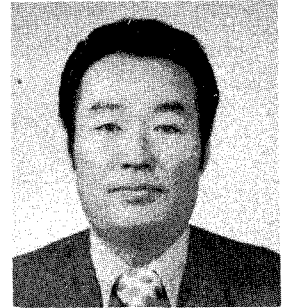


축산관계 법규와 계열화 추진

박 영 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1. 머 리 말

한국축산업은 근래에 심한 진통을 경험하고 있다. 경종농업위주의 부업축산에서 상업농시대 전문축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소득 3,000불 이상을 자랑하게 될 선진국형 사회 및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축산업은 지금 스스로의 생존 (Survival and Existence)과 발전 (Growth and Development)을 겨냥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개발경제와 수입자유화의 물결, 그리고 시장경제와 능률경쟁의 압력은 바야흐로 축산업위치의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다수의 전통적인 소규모 양축가와 소수의 신흥 경제규모 양축가가 전국에 걸쳐 병존한다는 데 있다. 이는 전자의 소득증대와 후자의 생산성제고라는 관점에서 그 합리성이 다같이 인정되는 과도기적 문제라 하겠다.

이와같이 축산업의 위치를 분명히 정립하고 양면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지난 8월 2일 축산법중 개정법률을 공포

했다. 그 개정의 이유는 축산물가격동락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기업축산을 규제하며 계열방식을 통하여 소규모양축가의 소득증대를 획책하는데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이 과연 한국축산의 소규모적 현실문제와 경제규모적 미래과제를 다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음을 들어왔다.

이 글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축산관계법규의 일반적당위성과 계열생산 및 판매체계의 추진과 관련되는 현 법규를 살펴본 후, 이번의 개정법률이 계열화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그 윤곽만을 지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축산법규의 일반적 당위성

축산에 관련되는 법규의 일반적 목적은 축산업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그 생산물의 상품화와 원활한 유통을 돕고, 나아가 축산물이 합리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에 걸친 기술 및 경제문제를 종합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축산업이 자

유경제원리에 의한 능률경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영위하게 하며 또 그 수행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요인제거와 전체적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축산관계법규의 내용은 시기적으로도 기술과 경제의 당면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시대에 뒤지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법규라면 오히려 축산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주변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도 암시할 수 있는 법규일때 그 실행효과는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시기에 적절하며 실현가능한 법이라야 올바른 법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축산에 관계되는 기능위주의 법규외에도 실행주체 중심의 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축산법규의 당위성, 즉 목적과 실현성을 종합한 통합법으로 하여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하고 다시 소비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합관리하는 마아케팅 보오드법과 생산과 유통만을 통합하는 마아케팅 오더법, 그리고 생산자중심의 자조적 통합체인 협동조합법을 들 수 있다.

3. 계열화 촉진을 위한 법규

한국축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는 법규로는 농업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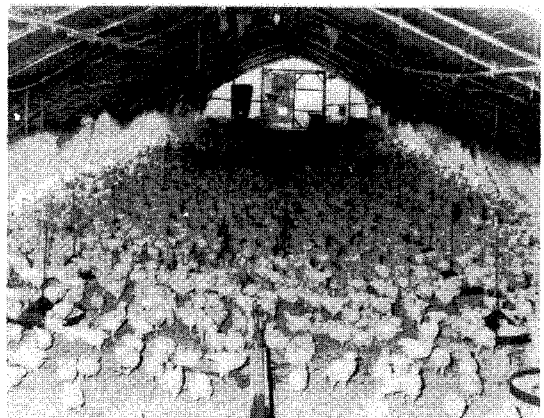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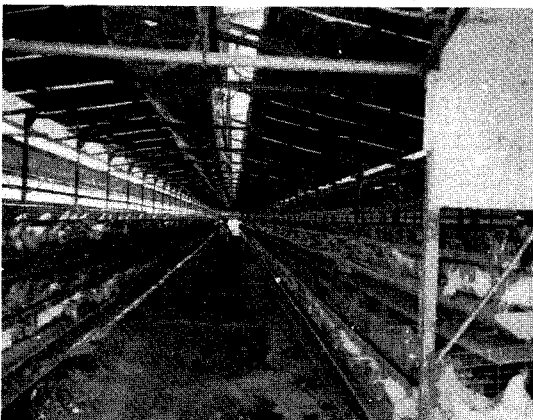
률 및 축산법 등이 있다.

첫째 농업기본법은 1967년 제정에 이어 1970년에 개정된것으로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업생산력의 증강, 농산물의 생산, 가격,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그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에 있어 협업농을 권장하고 축산협동체의 확충,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두는 현재의 양계, 양돈 및 낙농부문 계열체제화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둘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은 1976년에 제정, 1979년과 1980년에 개정된것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생산단지를 지정, 생산자금의 융자와 기술지원은 물론 농가와의 계약생산도 알선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에 의한 판매보장하의 생산은 물론 가격안정하의 생산 및 유통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양계와 양돈부문의 계열화는 이미 이 법의규정과 정신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난달에 개정된 축산법은 가축의 계열화생산조항을 신설하여 계열체제의 추진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한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바와 같이 축산부문의 계



열화를 촉진하는 법규는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므로 금후 계열화추진 및 지원에 따른 법적인 추가, 보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개정축산법중 계열화와 관련되는 조항

금번 개정된 축산법중 대통령령 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특히 사육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법의 기본 골격만을 기준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먼저 이 개정법률은 계열화 추진과 관련하여 긍정과 부정, 양면을 모두 내포 하고 있다. 긍정적인면은 계열화생산조항을 신설한 점이고 부정적인면은 각종 등록 또는 허가를 통한 강제적 규제라는 점이다. 이 개정법률에서 축산부문의 계열화생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기적절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 제13조에서 종축업자와 축산업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에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정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자에 대한 사육, 출하 등의 조정가능규정이 더욱 문제이다. 금후의 계열체제에서는 계약사육자의 규모가 양계에서 수만수, 양돈에서도 수백두는 되어야 한다고 할때, 또 그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될 경우 계열생산 및 판매체제는 어떤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13조에 명시하고 있는 계열생산조항의 취지로 보아 계열체제에 참여하는 사육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운용의 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돈을 생산하는 계열주체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이 법이 계열화수행에 지장을 줄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염려스러운 조항은 등록과 허가, 종축 및 가축의 사육상황과 생산계획서 제출, 생산출하의 조절, 판매방법과 판매가격의 규제, 양도 및 시설변경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 각종 벌칙규정 등이다. 이

를 걱정하는 이유는 마케팅 보오드법과 같이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법이 아닌한 부분적인 규제(특히 생산의 등록과 허가)만으로는 생산유통조정 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때문이다.

어떻든 이 개정법률의 내용은 그 개정동기와 과정은 물론 법규의 당위성으로 보아서도 과연 얼마나 현실과 부합하며 어디까지 시행 가능할 것인가에 커다란 의문이 생긴다. 또, 이 법의 부칙 경과조치에는 내년 5월 2일 이전까지 종축업자와 축산업자가 법이 정하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단편적이며 비생산적인 강제 조치가 진정 양계산물과 돼지가격을 안정시켜 줄 것인지 반문이 저절로 나온다.

5. 맺 는 말

현행 축산관계법규는 대체적으로 계열화추진을 독려 지원하는 입장이나 축산법중 개정법률의 일부조항은 이 촉진을 간접적으로 저해할 우려도 없지않다. 그러나 그 개정법률에서 계열화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한것으로 보아 이 법의 신축적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계열화추진은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므로법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축산업과 같은 특수여건의 계열화초기에는 어느정도의 정부관여가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들면 자금지원, 계약당사자간의 공정거래, 수급균형을 위한 생산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끝으로 이번의 축산법개정과 관련하여 “법은 그 당위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소농보호나 비농업자본의 농업부문투자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응당 헌법이나 농업기본법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마케팅 보오드형태의 법이 아니면서 생산의 등록이나 허가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문제거리이다.